

	비교과과정 운영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43		
		제정일	2019. 11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6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비교과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비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 및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기준 수립
2. 비교과과정 신설, 조정, 평가 및 폐지
3. 비교과과정의 지원 및 운영부서 간 조정
4. 성과 확인·점검·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선
5. 그 밖의 비교과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관계부서와의 협조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